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46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강준현·권칠승·김승원
김용만·김현정·문진석
박상혁·이강일·이광희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도 60세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 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교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해 짧고, 연구역량이 축적된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총액 인건비 체제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대기업,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정년 등) ① 연구기관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로 한다.

②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원(정년에 도달한 연구원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년 이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정년은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62세, 2030년부터

2031년까지는 63세, 2032년부터 2033년까지는 64세, 2034년부터는 65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3(정년 등) ① 연구기관</u> <u>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u> <u>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u> <u>는 65세로 한다.</u> <u>②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원(정</u> <u>년에 도달한 연구원을 계속하</u> <u>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u> <u>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년</u> <u>이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u> <u>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u> <u>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u> <u>체적인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